

도시관리계획(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77호(2025.08.28.)로 결정된 「화계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11일
강 북 구 청 장

I. 결정(변경) 사유

-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77호(2025.8.28.)로 결정된 화계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결정도면상 단순 표기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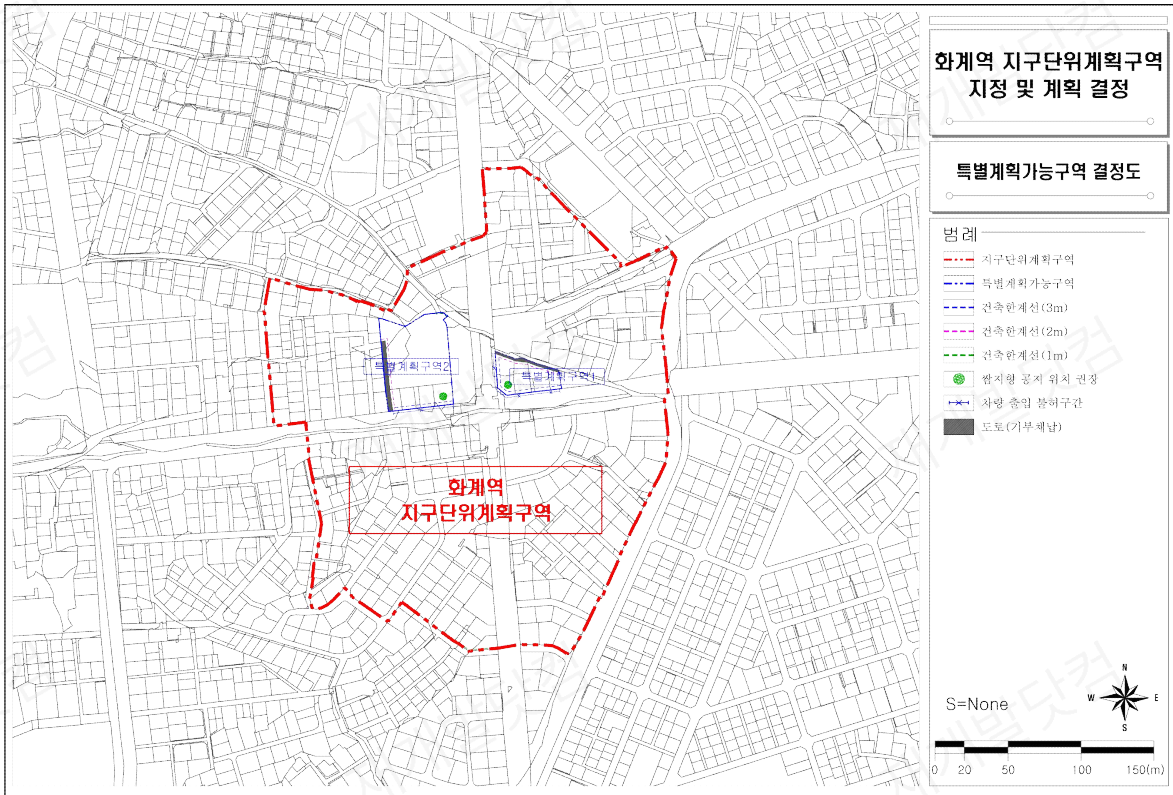
II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
III.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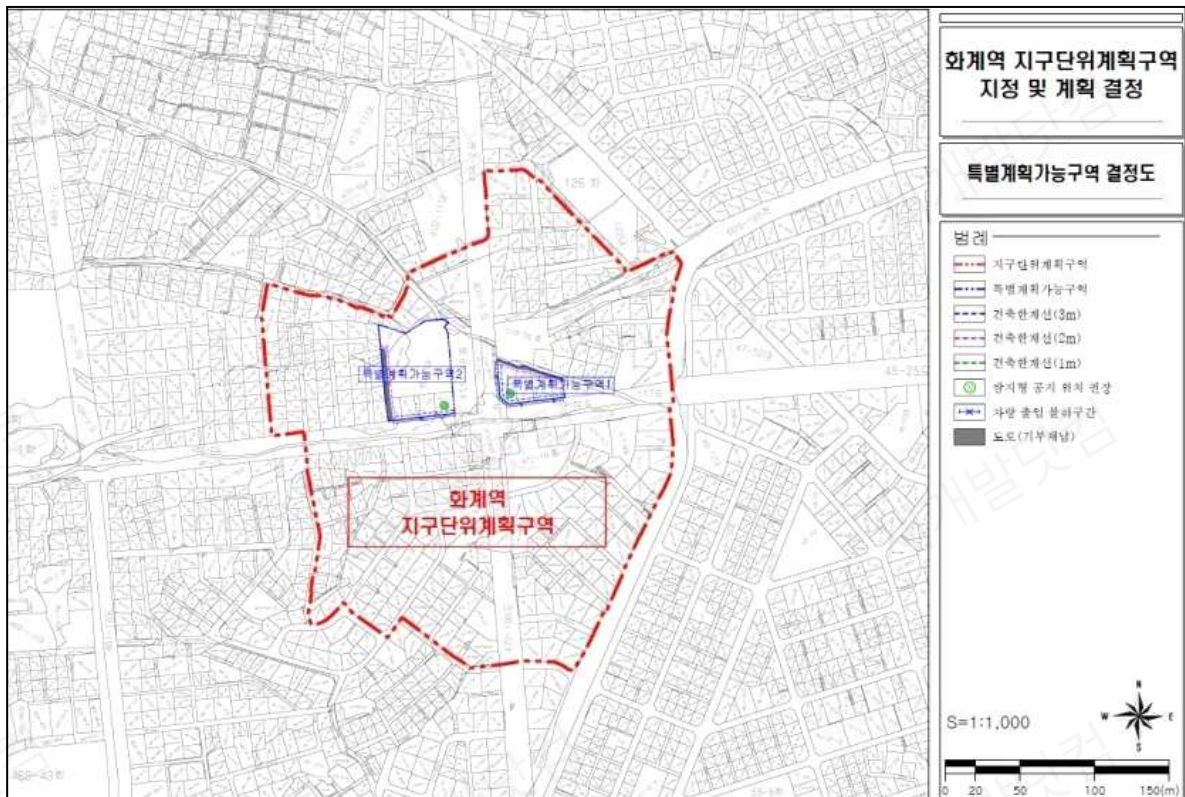
IV. 관계도면

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
-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(변경없음)
- 기반시설 결정도(변경없음)
-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-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- 권장용도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- 건폐율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- 용적률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- 높이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- 건축선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-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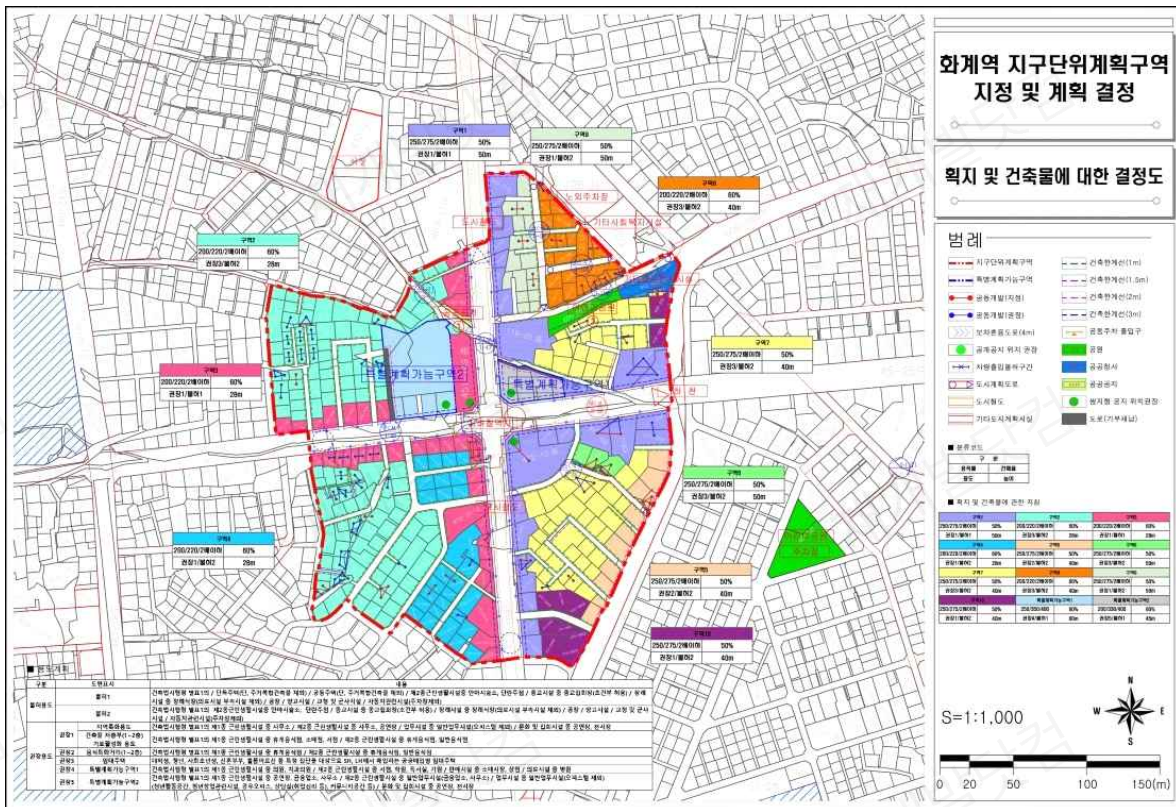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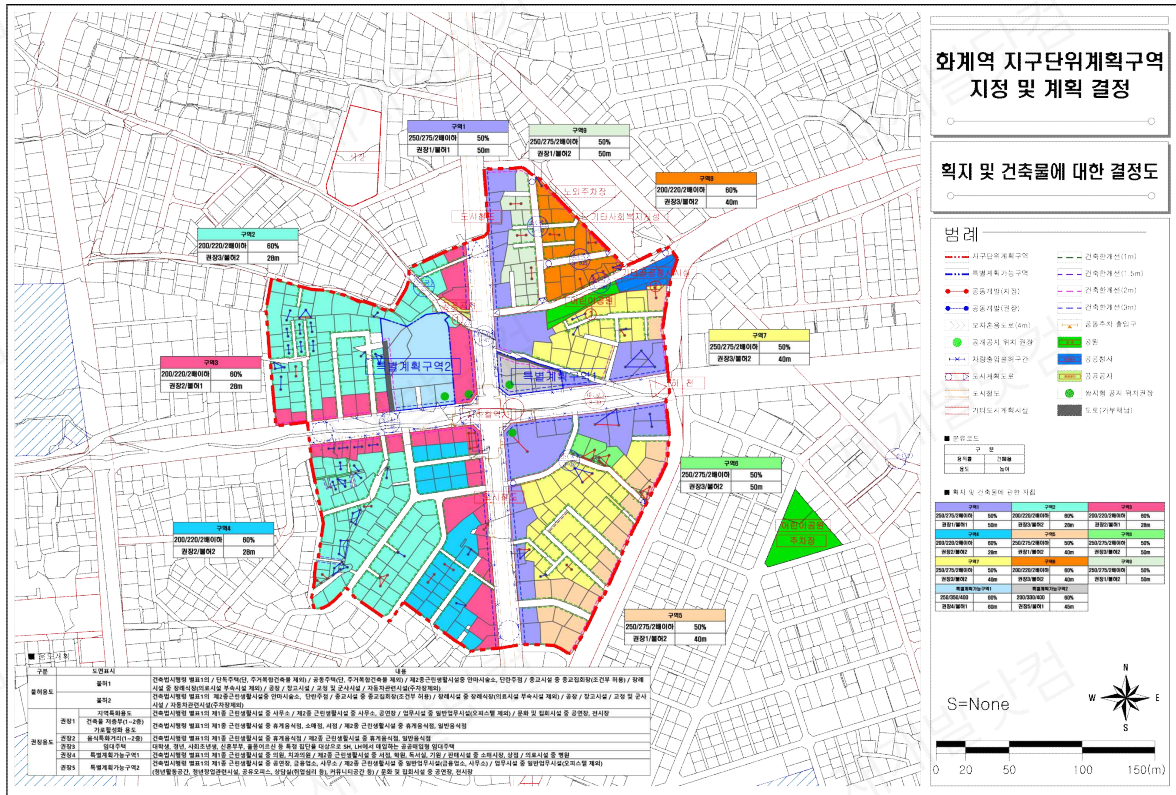
○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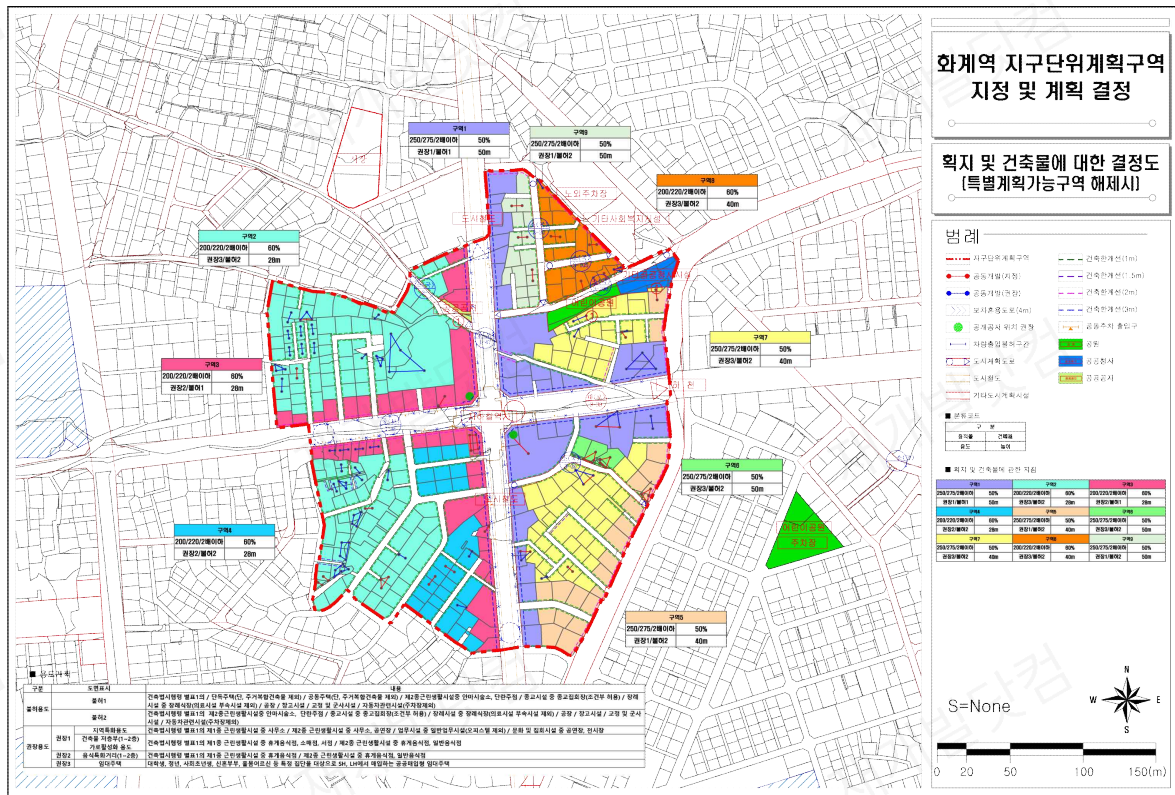
○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도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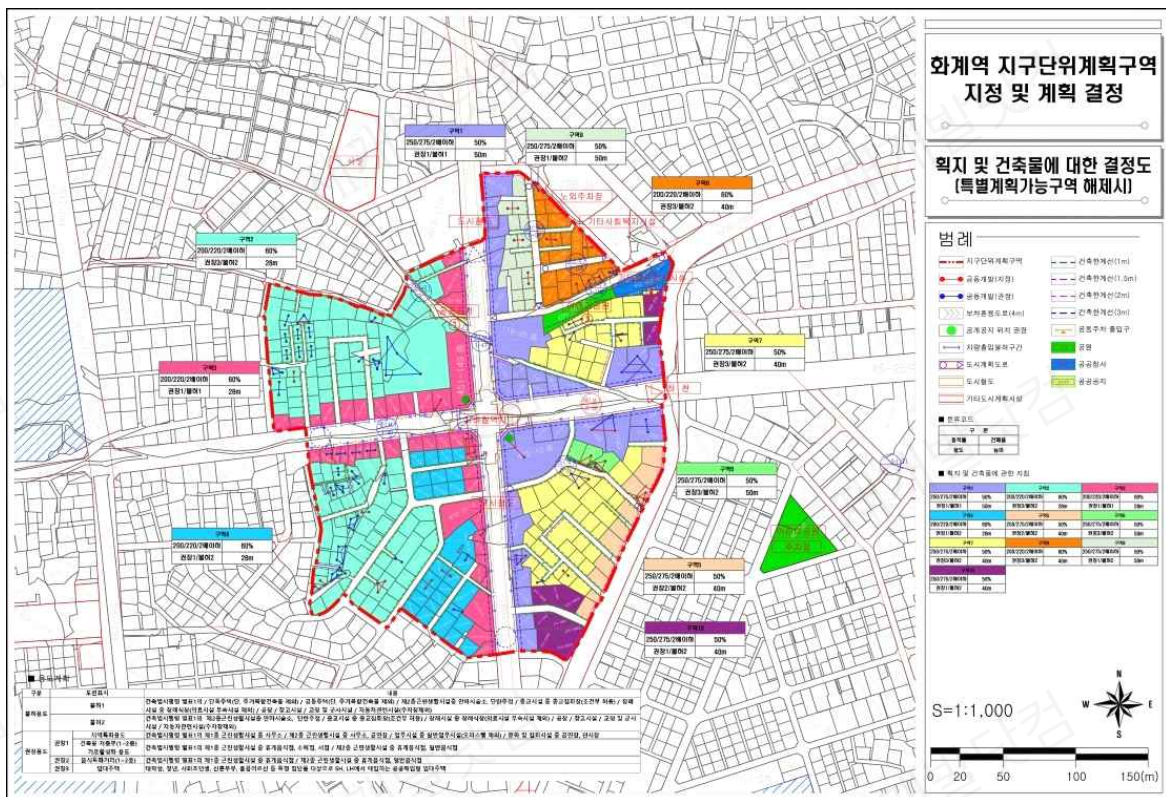
1



○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도 (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시)(기정)



○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결정도 (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시)(변경)

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V. 열람편의를 위해 강북구 도시계획과(☎901-6872) 및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